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래자동차부품 생산기업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92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철민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7. 31.
3. 회 부 일 : 2025. 8.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촉진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 저가 전기자동차의 시장진출 확대, 관세 인상 등으로 미래자동차 가격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업계의 생산비용 부담이 크고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그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생산시설 운영을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2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그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에 따른 “미래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술, 자율주행시스템 관련 기술, 소프트웨어융합 기술 또는 지능정보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¹⁾²⁾를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유형의 자동차와 첨단기술적 유형의 자동차 모두를 포함함.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제3호의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나. 가목 이외의 자동차 중 제2호의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

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율주행시스템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관련 기술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 및 같은 조 제6호의 소프트웨어융합 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로서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

마. 그 밖에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효율 및 안전·편의 향상 등에 관한 기술 중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미래자동차 부품 또는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생산시설 운영을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유형의 자동차를 포함하여 미래자동차 관련 부품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이 법률의 입법취지³⁾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부는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태양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⁴⁾,

이에 따라 동 개정안에 의한 미래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제27조(보급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⁵⁾ 개정안과 같이 별도규정을 신설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 심사시 정부조직법(법률 제20289호) 시행(2025.10.1.)에 따라 개정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 1>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범 위 (단위 사업당)		지 원예 산액 (백만원)		보 조 금 지 원 단가 (천 원, VAT제 외)		비 고	
건물 지원 사업	태양광 (고정식)	일반	100kW 이하		9,098	저탄소 모듈	576/kW	-		
		축사 및 축산시설					628/kW			
		RE100기업, 산단기업	200kW 이하				576/kW			
		건물일체형 (BIPV)	-		6,815	별도 검토		최대 70% 우대지원 (지붕형 50%, 벽체형 70%)		
			설계보조금		293	별도 검토		총사업비 공급가액의 3% 이내 최대 25,000천원 한도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 자연순환식)		1,500 ㎡ 이하	10.0MJ/㎡·day초과	4,925	664/㎡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7.5MJ/㎡·day초과		597/㎡				
				10.0MJ/㎡·day이하		531/㎡				
				7.5MJ/㎡·day이하		3,145/대				
				온수기 6㎡x대수		876/㎡				
				냉난방						
	지열(수직밀폐형)		1,000kW 이하		1,793	691/kW				
	연료전지		-		1,727	7,027/kW		-		
	기타		-		818	별도 검토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풍력, 수열 등		
	소 계		-		25,469	-		-		
시범적 사업			-		6,624	별도 검토		-		
총 계					32,093	-		-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건물지원)사업 지원공고」, 2025.2.

문 의 처
02)6788-5460